##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

일부개정 2023. 5. 15. 규정 제888호

### 1. 개정사유

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에 따라 마련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 제도개선(안)의 후속조치로 연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O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상향((안 제13조제1항)
  - 최저임금 상향, 물가 상승 등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2008년 이후 14년간 유지된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을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상향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개정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삭제하고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"별지 제8호서식"을 "별지 제9호서식"으로 변경 (안 제13조제2항, 안 제18조)

3. 주요 토의과제 : 해당사항 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(참고): 「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붙임: 개정안 및 신・구조문대비표

#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개정문

「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1항 1호의 학사과정 "월 1,000,000원" 을 "월 1,300,000원"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2호의 석사과정 "월 1,800,000원" 을 "월 2,200,000원" 로, 같은 조 같은 항 3호의 박사과정 "월 2,500,000원" 을 "월 3,000,000원" 로 한다.

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8조 중 "제8호서식"을 "제9호서식"으로 한다.

부 칙 (제888호, 2023. 5. 1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학생인건비 지급기준) ① 학생인건비는	제13조(학생인건비 지급기준) ①
계상률 100%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	
정한 금액으로 한다.	
1. 학사과정 : <u>월 1,000,000원</u>	1 : <u>월 1,300,000원</u>
2. 석사과정 : <u>월 1,800,000원</u>	2 : <u>월 2,200,000원</u>
3. 박사과정 : <u>월 2,500,000원</u>	3 : <u>월 3,000,000원</u>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「국가연구개발사업	<u>〈삭 제〉</u>
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116조제1항에 따라	
「학술진흥법」에 따른 학술지원사업	
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	
인건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	
사용기준」 별표 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	
<u> 따른다.</u>	
제18조(자체점검)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에	제18조(자체점검)
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	
자체점검을 실시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	
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별지 제8호서식을	<u>제9호서식</u>
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	
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	
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	
하여야 한다.	
	부 칙 (제888호, 2023. 5. 15.)
	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